

## 2025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

#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1차 공고

2025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4일

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

## 1. 사업 개요

### ■ 사업목적

- 서울 닥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제품의 실증기회 제공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서울 소재 테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촉진

### ■ 지원유형

구분	내 용
지원대상	-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원칙,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선택 가능 - 주관연구개발기관: (필수) 서울 소재 중소기업 - 공동연구개발기관: (선택) 산·학·연·병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(지역 제한 없음) ※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'중견기업',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'대기업'까지 포함 ※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※ 자유과제 - 실증기관이 '민간' 인 경우 「붙임4」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실증기관 <u>수요 확인서</u> 를 접수마감일 전 제출 필수
지원금액	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※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
연구개발 기간	과제당 <u>최대 1년</u> (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)
지원분야	인공지능, 로봇, 디지털헬스케어, 핀테크, IoT, 스마트시티, 메타버스 등 (AI 및 AI+X(기존산업) 분야를 전체 선정 과제 중 50% 이상 선정 예정)
지원규모	총 74억원, 37개 과제 내외 ※ 최종선정위원회 결과, 선정 기준 미달로 인해 미선정 과제가 발생할 경우, 추가 공고를 통해 과제를 선정

■ 지원내용

- 혁신산업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TRL 7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,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

구분	TRL1	TRL2	TRL3	TRL4	TRL5	TRL6	TRL7	TRL8	TRL9
내용	기본원리	개념정립	개념검증	시작품		시제품	실용화		양산
	기초이론 정립	기술개념 정립	특허출원/기본성능 검증	설계제작	성능평가	설계제작 성능평가	신뢰성 평가	시제품 인증	시판/시판 후 연구

■ 지원분야: 자유공모 / 수요과제형

- 인공지능, 로봇, 디지털헬스케어, 핀테크, IoT, 스마트시티, 메타버스 등
  - AI 및 AI+X(로봇, 핀테크 등 기존 산업) 분야를 전체 선정 과제 중 50% 이상 선정

■ 제안방식

구분	자유공모형	수요과제형
제안방식	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안	테스트베드 수요과제 목록(붙임3)을 참조, 실증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안
실증기관	최대 2개 기관 선택 가능	선택불가
	<자유공모형 실증기관 선택 시 유의사항> - 선택 범위 · 공공의 경우 서울시(자치구, 산하기관 포함),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및 해외 공공기관 등 · 민간의 경우 대학(산학협력단), 종합병원, 대중견기업 및 외국법인 등 ※ 자유공모형 중 실증기관이 민간인 경우 ‘실증기관 수요 확인서(붙임4)’ 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, 실증기관에서 실증 수요가 없을 시, 선정 취소, 협약 체결 중지 또는 해약할 수 있음	
	<b>민간 실증기관의 자격</b>	
	<b>기관</b>	<b>자격</b>
	<b>대학</b>	-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산학협력단
<b>병원</b>	- 의료법 제3조3의 종합병원	
<b>기업</b>	-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항의 ‘중견기업’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‘대기업’	
<b>외국법인</b>	-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‘외국법인’	
- 실증 장소 · 공공의 경우 공공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실증 장소로 함 · 민간의 경우, 민간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실증 장소로 하되, 기술 실증이 오프라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(예: 대규모 점포, 공장 등)에는 실증 면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제한함		

	장소	범위	예
	대규모 점포	3,000㎡ 이상	-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 등
	공장	500㎡ 이상	- 스마트공장, 제조공장 등
	아파트	500세대 이상	- 민영아파트, 주상복합아파트
	기타 건설현장	200㎡ 이상	-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
	<p>※ 단일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가 위 표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, 기준 미만일 경우 시설물을 추가하여 총 연면적 및 세대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</p> <p>-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업무 확인 후 부서명 또는 팀명을 정확히 기재 (예시) 서울경제진흥원(×) → 서울경제진흥원 인프라운영팀(○) 중로구(×) → 중로구 어르신여성과 어르신지원팀(○)</p>		
비고	<p>① 두 유형 모두 실증기관에서 제안내용 검토 후 ‘불수용’ 할 경우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 [자유과제-실증기관이 ‘민간’ 인 경우 접수 시 ‘붙임4]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실증기관 수요확인서’ 제출로 실증기관에서 ‘수용’ 한 것으로 간주</p> <p>② 수요과제형 및 자유공모형의 접수과제를 통합하여 선정평가 진행</p>		

## 2. 지원 원칙 및 기준

### ■ 기본 원칙

- AI 및 AI+X(로봇, 핀테크 등 기존 산업) 분야를 전체 선정 과제 중 50% 이상 선정  
※ 동 분야로 과제 신청할 경우 연구개발(실증)계획서 첫페이지 분야 부분 ‘AI 및 AI+X’ 체크 필수
- 서울시 ‘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을 위해, ‘약자 관련 과제 대상 가점 부여  
※ ‘약자 관련 과제’로 신청하기 위해선, 우대가점 중 ‘약자 지원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’의 내용 확인 및 체크 필수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  - 기존의 타 R&D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실증 과제를 본 과제로 지원 불가
  - 실증 대상 제품·서비스가 정부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
-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% 이상 필수 (현금 10% 의무 부담)
- 사업화를 위한 실증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지원
- 실증 대상물은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, 기술개발물(TRL 7이상)은 실증장소에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설치 또는 적용 될 수 있어야 함
-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

- 동 지원사업 중 'AI 및 AI+X' 분야로 선정된 과제는 개발결과물의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 「인공지능 신뢰성 검·인증」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함
  - ※ 고영향 인공지능(인공지능 기본법 기준) 과제 여부 확인 후 해당 시 「인공지능 신뢰성 검·인증」 신청 필수
- 협약체결 시,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 - 보증기간 :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+ 6개월
- 실증기관 의견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진행이 원칙이나, 자유과제-실증기관이 '민간'인 경우 접수 전에 실증기관의 수요를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함(〔붙임4〕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실증기관 수요확인서)를 접수 마감일 전 제출 필수
  - ※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
  - ※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
  - ※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'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' 참고

■ 지원 기준

-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(현금)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로 구성
  - (시지원연구개발비) : 전체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   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
  -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: 전체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부담
    - ※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
구분	전체 연구개발비(가)	시지원연구개발비 (나)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
			총액(다)	현금(라)	현물(마)
구성 기준	(나)+(다)	(가)의 75% 이하	(가)의 25% 이상	(다)의 10% 이상	(다)-(라)
(예시)	266,667,000원 (100%)	200,000,000원 (75%)	66,667,000원 (25%)	6,667,000원 (2.5%)	60,000,000원 (22.5%)

3. 연계 지원

지원시기	프로그램명	세부내용
협약 체결 시	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	<p>최종 선정과제의 연구 내실화 및 기술사업화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, SBA 협력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의견 진단 및 가이드 제공</p> <p>※ SBA 협력 공인인증기관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</p>

협약 체결 후 (공통)	조달청 혁신(시)제품 지정제도 어드바이저		B2G(공공기관) 매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, '혁신(시)제품 지정제도' 전문가와의 상담회 개최 또는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방문 및 상담
	규제· 인증	글로벌 규제·인증 코디네이터	글로벌 규제·인증에 대한 전문인력(코디네이터)를 확보하여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코디네이터 매칭 및 상담회 개최
		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후속 연계 지원	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
	데이터	데이터 품질 인증 지원	보유 데이터의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지원 및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등
		데이터 가치평가 비용 및 보증 지원	데이터 가치평가 신청 비용 및 가치평가 기반 보증 상담 지원
	AI	네이버 클라우드 '그린하우스' 프로그램 연계지원	① 공동 마케팅: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內 우수 개발과제의 입점·도입 지원 ② 협력 지원 :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'그린하우스' 와 연계하여 고객 니즈 맞춤형 지원 실시(기술지원, 행사참여, 밋업행사 등)
인공지능 신뢰성 검·인증 지원		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발급 비용 감면 및 사전진단 지원 등	

※ "3. 연계지원"의 세부 추진내용은, 협약 이후 대상 과제에 상세 내용 안내 예정

## 4. 신청자격

### 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(필수)

-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 - ※ 증빙서류 :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(본점 또는 지점)
  - ※ 단,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

### 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(선택)

- 산(기업)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'중견기업',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'대기업'
- 학(대학)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

- 연(연구원): 국공립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그 밖에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,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
- 병(병원): 「의료법」 제3조3의 종합병원(지역 제한 없음)
  - ※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
  - ※ 단,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을 포함한 실증기관의 경우,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 불가

■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주관연구책임자: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공동연구책임자: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, 연구원, 기업 대표·연구소장,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  - ※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, 권한 및 책임은 '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' 참고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■ 신청기간

세부사업명	공고기간	온라인접수 등록기간
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	'25. 3. 14. ~ '25 4. 21.	'25. 3. 25. ~ '25. 4. 21. 16:00

※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→ 로그인 →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
 ※ 접수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(등록기간 확인 필요)

- 신청방법 :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seoul.rnbd.kr/>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5년 3월 25일 09:00 시부터 가능
  - 신청 시 구비서류: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(PMS)에 온라인 업로드

구분	서 식 명	해당		제출 형태
		주관	공동	
<b>단계1: 사업 신청 시</b>				
계획서	연구개발계획서 ( <b>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</b> )	○	-	한글 또는 PDF
서류	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(증명원)	○	○	PDF
	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, 참여연구자(전체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수집·이용 동의서 (→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,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) <b>※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,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</b>	○	○	
전자 등록	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	○	○	시스템 입력
	연구개발과제 청렴 협약서 <b>※ 미제출 시,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</b>	○	○	
	최근 3년 간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 지원사업 수행 현황 (연구책임자)	○	○	
붙임 [자유과제 -실증기관 '민간']	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실증기관 수요확인서	○	-	한글 또는 PDF
붙임 [해당시]	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<b>※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(PMS)에 체크 필수</b>	○	○	
붙임 [해당시]	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	○	○	
<b>단계2: 발표평가 추천대상(서류평가 통과) 시</b>				
계획서	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( <b>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</b> )	○	-	한글 또는 PDF 및 EXCEL
서류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( <b>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</b> ) <b>※ 국세청 발급 재무상대표 제출</b>	○	○ (비영리x)	PDF
붙임 [해당시]	[별지서식 1-1]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(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) [별지서식 1-2]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(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)	○	○	한글 또는 PDF

※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

※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

○ 신청절차



## 〈신청 시 접수요령〉

###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

- 공고문 확인 : SBA R&D지원센터 - 알림마당 - 사업공고 (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)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: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

### ② SBA 누리집(<https://www.sba.seoul.kr/>)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

-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,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과 연동되며,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
- ※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
- ※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회원가입 후, 사업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기업정보를 입력하므로 **개인회원** 계정 명의 확인 및 **사업자 공인인증서** 준비 필수

### ③ 종합관리시스템(PMS) 접수

- SBA R&D지원센터 누리집(<https://seoul.rnbd.kr/>) 왼쪽 하단 '종합관리시스템' 클릭 하여 접속
-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
-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**통합공고 중 신청 희망하는 사업명을** 클릭
- 기본정보, 과제분류, 연구개발기관, 참여연구자,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

#### ◆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(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)

- SBA 누리집 개인회원 가입 후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
- 좌측 메뉴: 기관정보 → 기관조회 →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

-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
- ※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, [저장] 후 추가 업로드 가능(압축파일 업로드 금지)
- 최종 업로드 후,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
- ※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,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
- ※ 최종제출 후 접수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불가
- ※ 시스템 체크사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

## 6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
### ■ 추진절차



※ 상기 평가,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단계별 서류·발표평가의 통합 발표평가 진행 가능

※ 최종 선정과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연구지표 진단 후, 전자협약 체결

■ 선정평가

※ 선정평가 분과를 나누는 기준은 ① 실증기관이 공공/민간에 따라 ② 기술 분야별(AI 및 AI+X 분야 별도 분과 개설 예정) 분과를 나누어 평가 진행

실증기관의 성격 / 기술분야	AI 및 AI+X	타 기술분야*
공공	공공 / AI 및 AI+X	공공 / 타 기술분야 (예: 로봇, 핀테크 등)
민간	민간 / AI 및 AI+X	민간 / 타 기술분야

\* 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 변동 예정

① [서류평가]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성 및 실증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진행

-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.5배수를 '실증기관 의견조회 대상' 과제로 추천

$$\text{서류평가 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- 서류평가지표

〈실증기관이 국내 공공기관인 경우〉		
평가항목	세부평가지표	배점
공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,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</li> <li>· 공공업무 혁신, 공공경영 개선,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</li> <li>- (시책과의 부합) 서울시 주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정도</li> <li>- (시장 안착) 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성</li> <li>②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(시)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</li> </ul>	40
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시장 규모) 해당 제품·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</li> <li>- (시장의 파급성) 관련 기술·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</li> <li>- (사업화 전략의 구체성) 시장 조사 현황, BM수립 현황, 판로개척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등 구체성 파악</li> <li>- (사업화 경쟁력) 시장 진입장벽, 시장점유율, 타사 대비 경쟁 우위 등</li> </ul>	30

〈실증기관이 국내 공공기관인 경우〉		
평가항목	세부평가지표	배점
기술성	- (혁신성) 기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- (완성도)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(TRL) - (실현가능성)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※ AI 및 AI+X 분야 과제의 경우 AI 개발진척도 및 데이터 확보 현황 등을 추가 검토	20
예산 편성의 적정성	- (제품 단가의 적정성) 실증에 사용될 제품(장비, 소프트웨어 등)의 단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- (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) 실증 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보수, 인건비, 운영비 등의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	10

〈실증기관이 국내 민간기관인 경우〉		
평가항목	세부평가지표	배점
사업성	- (시장 규모) 해당 제품·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- (시장의 과급성) 관련 기술·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- (사업화 전략의 구체성) 시장 조사 현황, BM수립 현황, 판로개척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등 구체성 파악 - (사업화 경쟁력) 시장 진입장벽, 시장점유율, 타사 대비 경쟁 우위 등	50
기술성	- (완성도)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(TRL) - (실현가능성)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- (시급성) 기술의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 ※ AI 및 AI+X 분야 과제의 경우 AI 개발진척도 및 데이터 확보 현황 등을 추가 검토	30
실증 적합성	- (편익 증진)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시민편익증진 정도 - (가능성)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, 실현 가능성	10
예산 편성의 적정성	- (제품 단가의 적정성) 실증에 사용될 제품(장비, 소프트웨어 등)의 단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- (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) 실증 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보수, 인건비, 운영비 등의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	10

※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② [실증기관 의견조회] 서류평가 통과한 연구개발(실증)계획서의 제안 내용 기반 실증기관의 수용 의사 등 의견 수렴

※ 서류평가 통과 후 실증기관 의견조회 결과 '불수용'인(실증기관 매칭이 불성립) 과제인 경우 본 지원사업에서 선정 제외

- 실증기관은 수요과제당 최대 1개의 신청 과제만 '수용' 할 수 있고,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일한 수요과제로 신청하여 '실증기관 의견조회 대상'으로 선정된 경우, 실증기관에서 실증 가능성, 수요과제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1개의 과제를 선택해야 함
- '자유과제' 중 실증기관이 '국내 민간'인 경우 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나, 접수 공고 시, 실증기관의 수요 및 실증 협조를 사전에 득한 후 신청해야함

※ 자유과제 - 실증기관: '국내 민간' 인 경우 '붙임4]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실증기관 수요 확인서'를 접수마감일 전 제출 필수

③ [발표평가] '실증기관 의견조회' 결과 '수용' 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, 파급효과,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역량,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진행

-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1.3배수를 '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' 과제로 추천

$$\text{발표평가 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- 발표평가지표

〈실증기관이 국내 공공기관인 경우〉		
평가항목	세부평가지표	배점
공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,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</li> <li>· 공공업무 혁신, 공공경영 개선,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</li> <li>- (시책과의 부합) 서울시 주요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정도</li> <li>- (시장 안착) 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성</li> <li>②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(시)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</li> </ul>	50
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시장 규모) 해당 제품·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</li> <li>- (시장의 파급성) 관련 기술·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</li> <li>- (사업화 전략의 구체성) 시장 조사 현황, BM수립 현황, 판로개척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등 구체성 파악</li> <li>- (사업화 경쟁력) 시장 진입장벽, 시장점유율, 타사 대비 경쟁 우위 등</li> </ul>	30
기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혁신성) 기존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</li> <li>- (완성도)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(TRL)</li> <li>- (실현가능성)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</li> <li>※ AI 및 AI+X 분야 과제의 경우 AI 개발진척도 및 데이터 확보 현황 등을 추가 검토</li> </ul>	20

〈실증기관이 국내 민간기관인 경우〉		
평가항목	세부평가지표	배점
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시장 규모) 해당 제품·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</li> <li>- (시장의 파급성) 관련 기술·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,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</li> <li>- (사업화 전략의 구체성) 시장 조사 현황, BM수립 현황, 판로개척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등 구체성 파악</li> <li>- (사업화 경쟁력) 시장 진입장벽, 시장점유율, 타사 대비 경쟁 우위 등</li> </ul>	50

〈실증기관이 국내 민간기관인 경우〉		
평가항목	세부평가지표	배점
기술성	- (완성도)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(TRL) - (실현가능성)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- (시급성) 기술의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 ※ AI 및 AI+X 분야 과제의 경우 AI 개발진척도 및 데이터 확보 현황 등을 추가 검토	30
실증 적합성	- (편익 증진)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시민편익증진 정도 - (가능성)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, 실현 가능성	20

※ 상기 선정평가 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### ■ 현장점검

-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“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”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
-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,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점검하고,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선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

※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'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' 참조

### ■ 최종선정위원회

- 전문기관장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, 재무현황, 평판, 서울시책과의 부합성,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

※ 최종선정위원회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'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' 참조

※ 최종선정위원회 결과, 선정 기준 미달로 인해 미선정 과제가 발생할 경우, 추가 공고를 통해 과제를 선정

### ■ 우대가점: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적용

- 종합관리시스템(PMS) 상 '우대가점 탭'에 해당사항 체크 후, 증빙서류 업로드 또는 해당 입력사항 기재(1,000자 이내)

해 당 사 항		가 점
공통	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인 경우 (중복 가점 가능) ☞ 증빙서류 :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	각 1점
	② 최근 3년 이내 「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」의 전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'우수' 판정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☞ 증빙서류 : 서울형 R&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(결과공문: 우수 표기 과제)	1점

해 당 사 항		가 점
	③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「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☞ 증빙서류 : 하이서울기업 지정서 또는 확인서	2점
	④ 접수마감일 기준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☞ 증빙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 입주예정 확인서(해당 지원시설에서 발급)	1점
	⑤ ‘약자와의 동행’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(2점) ☞ 증빙서류 : 종합관리시스템(PMS) 접수 시, 우대사항 입력사항에 관련 기술개발 내용 1,000자 이내 작성 <b>※ 가점 최종 적용 여부는 ‘연구개발과제평가단’을 통하여 확정</b>  약자란? ▲ 복지사각지대 약자(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,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,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) ▲ 자립준비 청년(보호 종료 청소년, 부상제대군인, 예비청년부부, 가족돌봄청소년 등) ▲ 디지털 약자(스마트폰 약자, 정보 소외 약자, 신기술 약자 등) ▲ 정신건강 약자(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,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) ▲ 산업전환 약자(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) ▲ 주거 약자(반지하 거주자, 주거 빈곤계층 등) 등	2점
개별	① 최근 3년 이내 「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」의 7대 R&D*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‘우수’ 또는 ‘보통’ 판정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 * 바이오·의료, 인공지능, 핀테크, 로봇, 창조, 첨단제조, 양자기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만 해당 ※ Pre-R&D 사업 (서울혁신챌린지, 민간투자연계) 및 Post-R&D (테스트베드 등) 참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별도 가점 없음	1점
	② AI 및 AI+X 분야, 로봇, 디지털헬스케어, 핀테크 분야의 기술과제인 경우	1점

## ■ 감점 사항

감점 사항	감점
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&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	10점
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	1점

## 7. 지원제외 대상

- ※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- ※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신청 또는 평가대상**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, 선정 취소 가능
- ※ 연구개발기관 외 외부기관을 통한 **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, 명의도용,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시**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구 분	내 용
기관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</li> <li>※ 연구개발내용에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</li> </ul>
접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</li> </ul>
수행 과제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형 R&amp;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</li> <li>※ 단,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&amp;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</li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&amp;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</li> </ul>
과제 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(기지원, 기개발)이 인정된 경우</li> </ul>
인건비 계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책임자(주관, 공동)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한 경우</li> <li>※ 연구책임자(주관, 공동)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을 최소 30% 이상 계상하여야 함</li> </ul>
의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,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</li> <li>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/ul>
신용 및 기업 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의 부도 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</li> <li>- (체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해,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된 경우</li> <li>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(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체납·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</li> <li>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</li> <li>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</li> <li>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관련 문의처 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</li> <li>※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</li> <li>-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(완전자본잠식) 기업인 경우</li> <li>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, 상환우선주, 상환전환우선주(RCPS)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li> <li>※ 부채비율·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(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</li> </ul> </li> </ul>

구 분	내 용
	②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(주채권은행에 문의)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(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(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, ②공장, 기계장치, 시설 등 구입(신축) 증빙자료)
기타	-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본 공고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'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' 참조

## 8. 기술료 징수 기준 본 사업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17.에 의거 기술료 미징수 사업으로 미해당

## 9.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

-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-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, 연구개발기관(기관, 기관별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)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-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'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', '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' 및 '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' 적용
-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
※ 서울경제진흥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,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
## 10. 관련 규정

-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(2025. 3. 7.)
-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(2025. 3. 7.)
-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(2025. 3. 14.)

※ 세부사업별 신청자격, 지원기준,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

※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

## 11. 문 의 처

### ■ 사업 문의

세부 사업	연락처	이메일
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	02-2222-3813	testbed@sba.seoul.kr
	02-2222-3817	
	02-2222-3825	

### ■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

- 문의처 : 070-7710-9058